

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

-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
-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
- 한편,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「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」를 7.1.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 -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“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”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 -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(안)을 심의·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.
 -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(안)도 심의·의결했다.
- <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(안) 관련 >

- 금년 4월 22일 발표된 「고용안정 특별대책」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이 한시적으로 신설*된다.
 - *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.27부터 기 시행 중
-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.
- 이번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.

- 노사합의에 따라(노사합의서 등 제출)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,

* 고용조정 불가피성(30% 이상 매출액 감소 등)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

-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,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)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.

-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

-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.

※ 문의처: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, (국번없이)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

-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,

-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(2020.2.29. 포함)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*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('20.2.23.)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

- 한편,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, 지원요건·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
<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>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절차 | ⇒ | 유급휴업 3개월 | ⇒ | 무급휴직 90일 이상 (30일 전 신고) | 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 |
| 신속지원 프로그램 | ⇒ | 유급휴업 1개월 | ⇒ | 무급휴직 30일 이상 (7일 전 신고) |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(월 50만원) |

<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(안) 관련 >

□ 한편, 심의회는 '20.6.30.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'20.12.31.까지 6개월 연장하되, 대형3사*는 제외토록 하였다.

*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



□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('20.4.9)에 따라 진행되었으며,

○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,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('20.6.5)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.

○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「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.

붙임 1.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

2. '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안건(별첨)

| | | |
|---|---|--|
|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(☎044-202-7212), 고용장려금TF 백경남 사무관(☎044-202-7229),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윤주희 사무관(☎044-202-72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|---|--|

※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업 무 | 담 당 과 | 담 당 자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고용정책심의회 | 고용정책총괄과 | 박보현 사무관(044-202-7212) |
|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| 고용장려금TF | 백경남 사무관(044-202-7229) |
| 특별고용지원 업종 | 지역산업고용정책과 | 조형근 서기관(044-202-7406) 윤주희 사무관(044-202-7413) |

<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>

1.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?

□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(기존 일반절차)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→ (신속지원 신설)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필요

2.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| 1. 지원요건 확인 | 2.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(무급휴직 실시 7일 전) | 3. 신청 승인 후 통보 | 4. 무급휴직 실시 (휴직 30일 이상) | 5. 지원금 신청 및 지급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√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√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| √ 사업주가 신청 -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| √ 담당 고용센터 | √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휴직 | √ 사업주가 신청 √ 근로자에게 지급 |

①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<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>
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*

*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

| 기준 | | 제출 서류(예시) |
|-------------|--|---|
| 재고량 | 50% 이상 증가(직전 년도 평균 대비) | 재고대장 |
| 생산량 | | 생산대장 |
| 매출액 | 30% 이상 감소 (직전 3개월 평균, 직전년도 같은 달,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) |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,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|
| 재고량, 매출액 추이 | 재고량이 계속 20%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% 이상 감소 추세 (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) | 재고대장, 생산대장 등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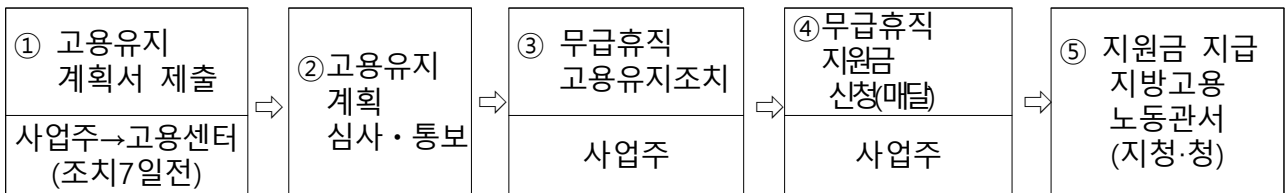
② 무급휴직 요건 충족(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| | 기준 | 제출 서류 |
|----------|---|--|
| 무급 휴직 | 1) (무급휴직 기간) 30일 이상 실시 2) (대상자)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- 99명 이하: 10명 이상 - 100명 이상 999명 이하: 10% 이상 - 1000명 이상: 100명 이상 3) 고용유지조치(휴업) 사전실시(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) 4)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| 1)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,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|

② ①,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**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**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③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,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신청 절차 >



3.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'20.7.1.부터 '20.12.31.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,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'20.6.15.부터 제출 가능합니다.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4. 누가 신청하나요?

- 무급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**무급휴직 실시 7일 전**에 신청하고,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

4-1.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?

-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
 - '13.4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
-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영세사업장(근로자 10인 미만) 무급휴직자는 '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'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-2.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총 90일 간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*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(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,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)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

6.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?

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.2.29. 이전(2020.2.29. 포함)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
○ 다만,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(일용근로자),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7.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?

7.1.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○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

8.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?

-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.
-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

9.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또한, 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”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.

10.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?

* (유사 질의) ▲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▲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·변조하는 경우 등

- 안됩니다.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,
 - 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따라서,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(www.ei.go.kr)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11.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?

1. 일반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

-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는 유급휴업 3개월 +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

- 한편,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의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,
 -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+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(Two-Track)으로 지원 수준·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 프로그램 >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절차 | ⇒ | 유급휴업 3개월 | ⇒ | 무급휴직 90일 이상 (30일 전 신고) | 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 |
| 신속지원 프로그램 | ⇒ | 유급휴업 1개월 | ⇒ | 무급휴직 30일 이상 (7일 전 신고) |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(월 50만원) |

*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<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>

12.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?
 ※ '20.4.27.부터 기 시행중

[특별고용지원업종]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운송업 ④공연업 ⑤항공기취급업 ⑥면세점 ⑦전시·국제회의업 ⑧ 공항버스

1.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*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+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* "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"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

2.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

한편,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(Two-Track)으로 지원 수준·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>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고용 지원업종 | 일반절차 | ⇒ | 유급휴업 1개월 실시 | ⇒ |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(30일 전 신고) | 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 |
| | 신속지원 프로그램 | ⇒ | | | 무급휴직 30일 이상 즉시 실시 (7일 전 신고) | 최대 90일 월 50만원 |

*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13.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'20.4.27.부터 '20.9.15.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,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4.27.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

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

-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
-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6월 16일(화)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.
- 신청인은 6월 22일(월)부터 7월 20일(월)까지 신분증과 신청서,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다만,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.



| 출생년도 끝자리 | 신청일 | 출생년도 끝자리 | 신청일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,6 (월) | 6월 22일 6월 29일 | 2,7 (화) | 6월 23일 6월 30일 |
| 3,8 (수) | 6월 24일 7월 1일 | 4,9 (목) | 6월 25일, 7월 2일 |
| 5,0 (금) | 6월 26일 7월 3일 | | |

- 이번 공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,
-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다만,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.

*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되어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

- 한편,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,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
- 이재갑 장관은 “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”라고 하면서
 - “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하였다.
 - 또한 “고용부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.

- |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: 1899-4162, 110 2.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: 1899-9595, 070-8899-8279, 8731, 8744, 7340, 7341, 7343, 7286, 7671, 7617, 5773, 5798, 5917, 5920, 7162, 7120, 7109, 7094, 7673, 7674 |
|--|

| | | |
|---|---|--|
|  공공누리 |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<p>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서기관(☎ 044-202-7314), 강주현 사무관(☎044-202-73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 |
|---|---|--|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- 259호

『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』 현장 접수 공고

『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』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-211호)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16.

고용노동부 장관

1 사업 개요

-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

* 자세한 요건은 첨부한 공고문 2020-211호 및 covid19.ei.go.kr 참조

2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

- 6.22(월)~7.20(월)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[첨부1]*에서 접수

*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

-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, 당초 공지된 7.1 보다 앞당겨 시행

- 첫 2주간(6.22~7.3)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

<5부제 신청 일자>

| 출생년도 끝자리 | 신청일 | 출생년도 끝자리 | 신청일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,6 (월) | 6월 22일 6월 29일 | 2,7 (화) | 6월 23일 6월 30일 |
| 3,8 (수) | 6월 24일 7월 1일 | 4,9 (목) | 6월 25일, 7월 2일 |
| 5,0 (금) | 6월 26일 7월 3일 | | |

1. 개인 신청

- 신청인은 ①신분증 및 ②신청서[서식1~3] 및 공통 자료[서식4~7], ③증빙자료(지원대상 및 소득감소요건)를 지참하여 방문, 접수처에 접수
 - * 필수서류: ①[서식1~3] 신청서, ②[서식4, 6, 7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부정수급 확약서, ③증빙자료[첨부2]
 - **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[서식5]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[서식16] 및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

2. 일괄 신청

- 사업주 및 협회 등은 소속 근로자 및 회원에게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
- (사업주) 일괄 신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빙자료가 표준화된 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
 - 모든 신청자가 ①가구 소득이 아닌 연소득 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고, ②동일한 비교대상 기간*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
 - * '19.3월, '19.4월, 연평균, '19.12월, '20.1월 중 하나를 선택
 - 일괄 신청을 원하는 경우 ①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[서식17], ②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[서식19] 1부,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제출
 - 엑셀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①일괄 신청용 신청서 1부[서식17] 및 ②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에 연소득, '19.12~'20.1, '20.3~4월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(엑셀 참조)

- (협회 등) 사업주가 아닌 협회 등 단체의 일괄 신청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
 - 이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[서식18], 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[서식19] 1부,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및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

4 기타 참고사항

- 현장 접수된 신청서는 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
 -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
 - *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
- 신청일로부터 2주내* 지급 원칙으로 하되,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회(2주) 연장될 수 있음
 - *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(2주 연장 가능)
-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(SMS 통보)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·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중복수급·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* 및 『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』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1.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: 1899-4162, 110
 2.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: 1899-9595, 070-8899-8279, 8731, 8744, 7340, 7341, 7343, 7286, 7671, 7617, 5773, 5798, 5917, 5920, 7162, 7120, 7109, 7094, 7673, 7674



참고1

고용센터 명단

| 센터명 | 관할구역 | 소재지(도로명) | 대표전화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 |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~5층, 9층 | 02-2004-7301 |
| 서 초 고 용 센 터 | 서울특별시 서초구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| 02-580-4900 |
|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 9층 | 02-3468-4794 |
|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| 02-2142-8924 |
|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·은평구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삼창프라자빌딩 4~5층 | 02-2077-6000 |
|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양천구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| 02-2639-2300 |
|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-10 탐라영재관 2~3층 | 02-2063-6700 |
| 서울북부고용센터 | 서울특별시 중랑구·노원구·강북구·도봉구·성북구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| 02-2171-1700 |
|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서울특별시 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·동작구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-3층 | 02-3282-9200 |
|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인천광역시 연수구·남동구·옹진군 |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| 032-460-4701 |
|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|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 |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| |
|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인천광역시 부평구·계양구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~5층 | 032-540-5641 |
|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인천광역시 서구·강화군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| 032-540-2001 |
|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부천시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| 032-320-8900 |
|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김포시 |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~5층 | 031-999-0900 |
|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의정부시·포천시 |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-2층 | 031-828-0900 |
|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구리시 |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| 031-560-5800 |
|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남양주시 |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| 031-560-1918 031-560-1928 |
|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동두천시·연천군, 강원도 철원군 |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| 031-860-1700 |
|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양주시 |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| 031-849-2300 |
|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고양시 |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 | 031-920-3937 |
|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파주시 |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| 031-860-0401 |
|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인천광역시 부평구·계양구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~5층 | 032-540-5641 |
|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수원시, 화성시동탄1~6동·병점1~2동·진안동·반월동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-4층 | 031-231-7882~3, 7838 |
|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용인시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엔플러스빌딩 2, 4층 | 031-289-2210 |

| 센터명 | 관할구역 | 소재지(도로명) | 대표전화 |
|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화성시 (수원고용센터 관할지역 제외) |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층 | 031-290-0844 |
|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성남시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| 031-739-3177 |
| 경기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광주시·양평군 |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| 031-799-2760 |
|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이천시·여주시 |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원빌딩 1~3층 | 031-644-3820 |
|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하남시 |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| 031-730-7000 |
|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안양시·군포시 |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타워 2~4층 | 031-463-0700 |
|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광명시 |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-2층 | 02-2680-1500 |
|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의왕시·과천시 |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2층 | 031-463-7460 |
|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안산시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| 031-412-6600 |
|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시흥시 |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층 | 031-496-1900 |
|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평택시 |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| 031-646-1205 |
|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안성시 |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2층 | 031-686-1762 |
|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기도 오산시 |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| 031-8024-9805 |
|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춘천시·화천군·홍천군· 양구군·인제군, 경기도 가평군 |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| 033-250-1900 |
|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강릉시·동해시 |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실험빌딩 2층 | 033-610-1956, 1957 |
|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속초시·고성군·양양군 |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| 033-630-1919 |
|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원주시·횡성군 |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| 033-769-0909 0916, 0973 |
|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태백시 |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| 033-550-8683 |
|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삼척시 |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| 033-570-1900 |
|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강원도 영월군·정선군·평창군 |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, 2층 | 033-371-6256 |
|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부산광역시 중구·동구·서구· 영도구·남구·부산진구·연제구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| 051-860-1919 |
|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부산광역시 사하구 |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 8층 | 051-520-4900 |
|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부산광역시 동래구·금정구· 수영구·해운대구·기장군 |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| 051-760-7100 |
|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부산광역시 북구·사상구·강서구 |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-5층 | 051-330-9900 |
|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창원시 (의창구·성산구·진해구) |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 빌딩 | 055-239-0900 |
|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창원시(마산회원구· 마산합포구)·함안군·의령군· 창녕군 |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·15대로 628 무학빌딩 3~5층 | 055-259-1500 |
|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울산광역시 |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| 052-228-1919 |
|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김해시 |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| 055-330-6400 |

| 센터명 | 관할구역 | 소재지(도로명) | 대표전화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밀양시 |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 | 055-356-8225 |
|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양산시 |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| 055-379-2400 |
|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진주시·사천시·산청군 |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~5층 | 055-753-9090~1 |
| 하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하동군·남해군 |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-3 | 055-884-8219 |
|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 |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| 055-949-6589 |
|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통영시·고성군 |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| 055-650-1800 |
|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남도 거제시 |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| 055-730-1919 |
|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구광역시 중구·수성구 |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| 053-667-6000 |
|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구광역시 북구, 경상북도 군위군 |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다운빌딩 | 053-606-8000 |
| 대구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구광역시 동구 |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| 053-667-6900 |
|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경산시·영천시· 청도군 | 경북 경산시 중앙로 85,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~4층 | 053-667-6800 |
|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구광역시 남구·서구·달서구 |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| 053-605-6500 |
|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구광역시 달성군, 경상북도 고령군 |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| 053-605-9510 |
|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)·성주군 |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| 054-970-1919 |
|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포항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 |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| 054-280-3000 |
|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경주시 |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, 7~8층 | 054-778-2500 |
|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구미시·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) |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| 054-440-3300 |
|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김천시 |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| 054-429-8900 |
|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영주시·봉화군 |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| 054-639-1122 |
|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문경시·상주시 |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,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~4층 | 054-559-8200 |
|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경상북도 안동시·예천군· 의성군·청송군·영양군 |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| 054-851-8061 |
|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광주광역시 동구·서구·남구· 북구, 전라남도 나주시·화순군· 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 |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| 062-609-8500 |
|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광주광역시 광산구, 전라남도 영광군·함평군 |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| 062-960-3200 |
|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전주시·무주군·장수군· 진안군·완주군·임실군 |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| 063-270-9100 |
|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남원시·순창군 |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| 063-630-3900 |
|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정읍시 |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| 063-530-7500 |
|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익산시 |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| 063-840-6500 |
|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김제시 |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| 063-540-8400 |
|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군산시 |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| 063-450-0600 |

| 센터명 | 관할구역 | 소재지(도로명) | 대표전화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북도 부안군·고창군 |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변영로 145 새만금빌딩 | 063-580-0501 |
|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남도 목포시·신안군· 진도군·무안군·영암군 |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| 061-280-0500 |
|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남도 강진군·해남군· 완도군·장흥군 | 전라남도 해남군 중앙1로 61 | 061-530-2908 |
|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남도 순천시·보성군· 고흥군 |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| 061-720-9114 |
|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남도 여수시 |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, 2층 | 061-650-0155 |
|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전라남도 광양시 |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커뮤니티센터 8층, 9층 410 | 061-798-1900 |
|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 | 대전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| 042-480-6000 |
|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공주시 |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5층 | 041-851-8501 |
|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논산시·계룡시 | 충남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| 041-731-8600 |
|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세종특별자치시 |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| 044-865-3219 |
|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북도 청주시·청원군· 진천군·괴산군·보은군·증평군 |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| 043-230-6700 |
| 옥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북도 옥천군·영동군 |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층 | 043-730-4100 |
|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천안시·당진시· 예산군 |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-5층 | 041-620-7400 |
|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아산시 |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(지상 2,4층) 29 | 041-570-5500 |
|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북도 충주시 |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| 043-850-4000 |
|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북도 제천시·단양군 | 충청북도 제천시 금왕읍 내토로 441 | 043-640-9310 |
|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북도 음성군 |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13 | 043-880-8600 |
|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보령시·서천군· 부여군·홍성군·청양군 |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| 041-930-6200 |
|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충청남도 서산시·태안군 |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| 041-669-1919 |
|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제주도 |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| 064-759-2450 |

① 공통 제출

1. [서식 1]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
 2.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
 3. 일정 소득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(아래 중 하나 선택)
 - (연소득으로 신청 시)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서류, ②소득금액 증명원, ③'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
 - (가구소득으로 신청 시) [서식4]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 - (연매출로 신청 시)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서류,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, ④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, ⑤그 외 입증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
- *②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불필요 (①은 7.1 이후 제출 불필요)

② 특고·프리랜서

1. '19.12~'20.1월 중 특고·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-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(재직증명서 등)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(용역계약서, 위(촉)탁 서류,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)
-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
 - '20.3~4월 소득(필수),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(필수)이 포함되어야 함
 - * 비교대상 기간은 '19.3, '19.4, '19.12, '20.1, '19년 평균 중 선택 가능
 -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(수당·수수료 지급 명세서(사업주 발급) 등)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(택1)

③ 영세 자영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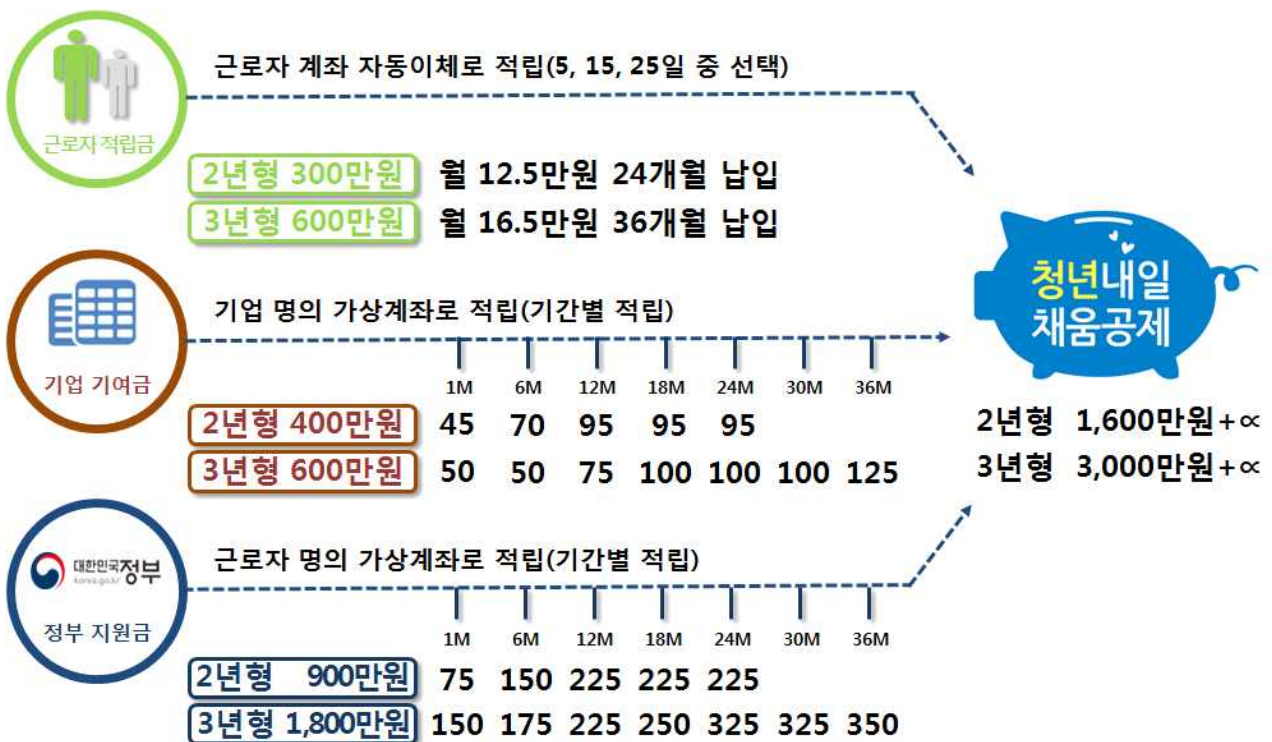
1. 사업자등록증
2.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(소득으로 입증 시 ②특고·프리랜서 참조)
 - '19.12~'20.1월(필수), '20.3~4월(필수), 비교대상 기간의 매출(필수)이 포함되어야 함
 - * 비교대상 기간은 '19.3, '19.4, '19.12, '20.1, '19년 평균 중 선택 가능
 -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(직불,현금)카드 매출액 확인,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,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, ④매출 (전자)세금계산서 합계표,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(또는 은행계좌) 거래내역 사본 등

④ 무급휴직자

1.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
2. (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) 근로계약서 사본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 |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 |
| 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 |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 |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| | | |
|---|------------|--|
| 1 | 고용창출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|
| 2 | 고용안정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
| 3 | 고용유지지원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 |
| 4 |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|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| 양 장려금 | 중복 시 | 지원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 | 고용창출장려금 | + 70% 추가지원 |
| | 고용안정장려금 | + 100% 추가지원 |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|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|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고창 장려금 공출금 |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| 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|
| |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| 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 |
| | 국내 복귀 기업 지원 | 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 |
| |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| 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|
| |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| 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|
| | 고안 장려금 공정금 | 정규직 전환지원 |
|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| | 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 |
|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| | 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 |
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 | 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 |
| 고유 지원금 | 고용유지 지원금 | 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
| |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 | 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
| 장년· 고령자 고용 장려금 |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| 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|
| |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| 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 |